(재)인천테크노파크 공고 제2022-190호

「2022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후속지원 기업 모집 공고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의 후속 지원 기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2년 4월 20일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 · · · · · · · · · · · · · · · · · ·	
 □ 목 적 : 글로벌 강소기업의 후속 지원 요청에 따라 맞춤형	지원
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수출 선도 중견	기업
으로 육성	
□ 지원대상 : '19년, '20년, '21년 인천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 '19년, '20년, '21년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기업 중 인천으로 이전한 기업 포	함
□ 지원규모 : 15개사 내외	
□ 지원금액 : 기업당 1,000만원 이내	
□ 지원기간 : 선정일로부터 ~ 2022. 10. 31.(월)	
※ 지원금 사용 인정 기간 : 지원금 사용계획서 승인일 ~ '22. 10. 31.(월)	
□ 신청기간 : 2022. 4. 20.(수) ~ 5. 4.(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 Bizok(비즈오케이) 회원가입/로그인 후 온라인 접~	Ì
(https://bizok.incheon.go.kr/open_content/main.do)	
□ 문 의 처 : 인천TP 기업지원센터 서수민 과장(☎032-260-0616)	

2 추진절차

구 분	수 행 내 용	일 정
기업 → 인천TP	① 지원기업 모집 및 사업신청서 접수 ※ 사업신청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동시 접수	4. 20(今) ~ 5. 4(今)
	•	
인천TP	② 후속지원 신청기업 서면평가	5. 12(목)
	+	
인천TP → 기업	③ 지원금 사용계획서 검토 및 승인 통보	5. 16(월) ~ 5. 20(금)
	+	
기업	④ 기업별 지역자율프로그램 수행	~ 10. 31(월)
	+	
기업 → 인천TP	⑤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	완료 시 ~ 11월 초
	+	
인천TP	⑥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	11월 중
	1	
인천TP → 기업	⑦ 지원금 지급	11월 중

- ※ 상기 일정 및 절차는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 ① (신청서 접수) 기업별로 희망하는 지역자율프로그램 선택 후 사업신청 서 및 지원금 사용계획서 제출
- ② (서면평가 및 기업선정) 기업역량 및 성장가능성, 사업수행계획 평가
- ③ (계획서 검토 및 승인) 기업별 지원금 사용계획서 검토 및 승인 통보
- ④ (프로그램 수행) 기업별 지원프로그램 개별 수행
- ⑤ (결과보고 및 지원금 청구) 프로그램 수행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청구
 - ※ 프로그램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조기 수행완료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금 조기 지급) (예: 시제품 제작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9월), 특허출원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11월)
- ⑥ (결과보고서 검토) 결과보고서 및 지출 증빙서류 검토
- ⑦ (지원금 지급) 결과보고 내용 이상 없을 시 지원금 지급

3 지원내용

□ 후속지원 프로그램

NO	구분	세부프로그램	주요 내용	한도	기업 부담금
		R&D기획	● 과제 기획 지원, 연구 조직 설립을 위한 컨설팅 등		
		기술획득	• 기술이전 비용 지원		
1	기술 지원	해외규격인증	• 해외 제품인증 획득에 필요한 수수료 등 지원		
	' -	국내외특허출원	● 상표출원, 국내외 특허 출원비 등 지원		
		시험분석	• 국내외 성능시험, 검사비용, 테스트 비용 등 지원		
		시제품제작	● 시제품 설계, 제작 등 지원		
2	사업화 지원	디자인개발	● 제품, 시각, 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_	수출브랜드개발	● 수출을 위한 회사 및 제품의 브랜드 개발		
		해외진출	• 외국어자료 통번역, 현지 법인 및 공장설립 등 해외현지 클레임 및 지재권 분쟁 지원, 제품 매뉴얼 제작 등		
3	마케팅 지원	제품홍보	• 현지 시장의 문화적 특성, 소비자 성향을 반 영한 현지화된 홍보물 제작 지원		
		전략수립및컨설 팅	 해외 시장 진출 및 현지대응 등을 위한 전문 기관을 통한 컨설팅 지원 	1,000만원	없음
		해외전시회	●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부스임차료 등)		
4	경영 기반 지원	정보화시스템구축	• 경영관련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인력채용박람회	• R&D, 해외 마케팅 관련 채용 박람회 참가비 및 부스비 지원		
5	인력 5 양성 지원		• R&D, 해외 마케팅 담당 직원 채용 관련 헤 드헌팅비, 채용 사이트 광고(배너 등), 온·오 프라인 채용 관련 서비스 이용료	I I	
		직원역량강화	• R&D, 해외 마케팅 담당직원의 교육 훈련, 참석 지원		
6	녹색 경영	탄소중립경영컨설팅	• 탄소중립 경영컨설팅 지원(탄소수준 진단 및 관리체계 구축, 탄소저감 제품 시험 등)		
	지원	저탄소인증및교육	● 친환경·저탄소 인증 및 인증 관련 교육		

- ※ 기업별 총 지원금액(1,000만원) 내에서 신청 가능(프로그램 2개 이내)
- ※ 총 지원금는 부가가치세(VAT) 미포함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및 지원금 초과 비용은 기업 부담

□ 프로그램 세부내용

1. 기술지원

① R&D 기획 지원

 (지원내용) R&D 기획 역량 강화를 위한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자발적인 R&D 기획 촉진(중소기업에서 제안한 기술과 매칭된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R&D기획 수행 및 연구 조직(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설립을 위한 컨설팅 등)

지 원	지원분야 세부내용		
기술분석		·기술개요, 기술현황과 전망, 선행특허기술분석	
	기술성 진단	·기술혁신성 및 기술경쟁력, 기술개발인프라, 기술전략 타당성 진단	
기술 분야 기술개발전력		·기술니즈 분석, 기술개발 핵심전략, 기술개발계획	
	기술로드맵	·기술수준 분석 및 R&D목표, 니즈분석과 전략제품 도출, 시장·제품· 기술로드맵 전개, 기술관리 계획	
시장분석		·시장개요, 시장특성, 시장 동향 및 전망	
사업성 및 경제성 분야	경제성 진단	·사업화 계획, 사업화추진계획 분석, 수익성 분석, 경제적 파급효과	
	사업화 전략	·기술사업화 주체역량, 내부 및 외부요인 분석, 사업화 추진전략 수립	

<R&D 기획 지원 내용(예시)>

- (지워조건) 정부연구개발사업 지원을 위한 과제기획에 한함
- 비용 청구시 R&D 과제기획보고서 포함 제출
- 신청 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또는 신청 과제가 동일 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 내용과 유사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구 분	확인방법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지원사업으로 기지원과제 자료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 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의 "정보마당→지원과제→ 기술분야별 검색 또는 키워드검색"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과제참여→유사과제"

- 수행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결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R&D 과제기획보고서, 용역계약서, 연구

조직 인증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 증, 회의록, 서명록, 회의 사진, 전문가 작성 원고, 기타 인천 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② 기술 획득 지원

- (지원내용) 외부의 우수기술(국내·외 특허권 등의 지적재산권) 을 이전 받기 위한 기술이전 비용을 지원
- (지원조건) 기술이전 대상이 노하우 및 기술자문인 경우(특허가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 계약 시 중개기관으로 '인천테크노파크'를 명시
- 특허의 양도, 전용 · 통상실시권 기술이전 계약인 경우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
- 지원기간 내 지급(기술이전계약체결, 기술이전료 납부 등)완료 원칙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기술거래 계약서, 세금계산서, 송금확인증, 공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 TP에서 요청하는 증빙서류 등

③ 해외 규격 인증 지원

- (지원내용) 해외규격인증 획득을 위한 인증비, 시험비, 심사비,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며 제품 관련 인증 지원에 한함
- (지원조건) [별첨]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481개 인증) 분야 등
-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이후 추진한 해외인증획득 서비스에 한 하며 지원금은 지원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
- 지원기간(10/31)까지 인증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결과보고서에 인증 획득 진행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향후 인증서 발급 시 인증 획득 증명서 제출
- 해외 규격 인증을 위한 수행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결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 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④ 국내·외 특허 출원 지원

- (지원내용) 기업보유 지식재산에 대한 국내·외 특허 출원 비용 과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한 IP 컨설팅 지원, 상표출원
- (지원조건)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이후 추진한 특허 출원 서비 스에 한하며 지원금은 지원기간에 발생한 비용만 인정
- 특허 등록 비용은 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특허 등록 후에는 등 록증 제출
- 수행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결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특허출원서(특허출원번호통지 서, 특허출원서), 특허출원 관납료 영수증, 세금계산서, 인보이 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 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⑤ 시험분석 지원

- (지원내용) 해외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국내·외 성능 시험, 검사 비용, 테스트 비용 지원
- (지원조건) 국내외 시험분석 지원(공인시험 분석, KOLAS 분석 등)
- 국내외 공인 인정기구에서 지정한 시험기관의 성적서 여부 및 관리·감독을 통해 사실 결과를 확인
- 인증 획득을 위한 시험일 경우 지원규격별 해당 인증기관 및 해당 인증기관에서 지정한 시험기관 인정
- 지원기간 내 시험분석한 건에 한함
- 외부장비 임차료, 기업 보유 장비 활용을 통한 시험 분석비는 불인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시험성적서, 세금계산서, 인보

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2. 사업화 지원

① 시제품 제작 지원

- (지원내용) 제품개발을 완료하고 제품 제작 도면, 디자인 목업 등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한해 워킹 목업(실물 모형), 금형 (부분품 포함) 등 제작 지원
- (지원조건)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사업기간 내 제작 완료된 것에 한함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검수서(사진 등),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② 디자인 개발 지원

- (지원내용) 제품·시각·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
- 제품 디자인 : 신규 디자인 개발, 기존 생산 제품의 리디자인(re-design) 등
- 시각/포장 디자인 : BI(브랜드 디자인), CI(기업이미지통합 디자인) 범주 내 원본화 및 매뉴얼 변경 작업 등 신규 및 리디자인 위주
- 통합디자인 : 제품+포장, 제품+시각, 시각+포장, 제품+포장+시각 등
- (지원조건) 사업기간 내 제작완료된 것에 한함
- 수행 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한 산업디자인전문회사로 수행기관 선정
 - 디자인DB 조회(http://designfirm.kidp.or.kr/com_search/search.asp)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용역계약서, 검수서(사진 등),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수행기관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및 사업 자 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③ 수출브랜드 개발

- (지원내용) 회사 및 상품 브랜드 개발 및 유지, Cl·BI 등록·출원 등 지원
- (지원조건) 수출을 목적으로 개발하는 브랜드에 한하며 사업기 간 내 개발완료된 것에 한함
- 브랜드 개발지원을 위해 해당 수행기관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결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용역계약서, 검수서, 세금계산 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 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3. 마케팅 지원

① 해외 진출 지원

- (지원내용) 외국어자료 통번역, 현지 법인 및 공장설립, 해외 현지 클레임 및 지재권 분쟁 법률 지원, 바이어 발굴, 제품 해외 매뉴얼 제작 등
- (지원조건) 수행기관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
- 지원기간 내 결과물이 완료되어야 하며 지원기간내 비용이 지 급 된 부분에 한함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용역계약서, 검수서, 세금계산 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 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② 제품 홍보 지원

○ (지원내용) 카탈로그·브로슈어, 제품 디자인 및 모바일웹, 상품 페이지 제작, 외국어 홍보 영상, 검색 엔진 마케팅, 해외 유명

- 온오프라인 매장 및 쇼핑몰 판촉전 지원, SNS 마케팅 등 지원
- (지원조건) 수출을 목적으로 제작된 제품으로 지원기간 내 제작 완료된 것에 한함(한국어 지원불가)
- 수행기관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선정시 인천 TP와 협의하여 선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검수서, 용역계약서, 세금계산 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 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③ 전략 수립 및 컨설팅

- (지원내용) 1:1 로드맵 수립 및 지원 항목 코칭, 경영 멘토링, 해외 시장 조사, 법인 설립 자문, 지재권 등록, 투자 유치지원, 해외 진출 전략 컨설팅 등
- (지원조건) 수행기관을 반드시 선정하여야 하며 컨설팅 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혐의하여 선정
- 지원기간 내 결과물이 완료되어야 함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용역계약서, 검수서, 세금계산 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 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④ 해외 전시회 지원

- (지원내용) 해외 개최 국제 전시회 참가시 참가료, 부스 임차료,
 장치 설치(자산성 제품 지원 불가) 비용, 전시품 이송료 지원,
 온라인 전시관 등록 비용, 샘플 발송 지원 등
 - ※ COVID-19 상황을 반영하여 온·오프라인 해외 전시회를 대상
- (지원조건) 심포지움, 세미나 등 전시회와 관련 없는 분야 지원 제한
- 정부, 지자체, 지원기관을 통해 참가하는 전시회 중복 지원불가
- 지원금 지원은 지원기간 내 개최된 국제 전시회에 해당하며,

지원기간 내에 행사가 개최되었다면 지급 비용은 소급인정(당해년도 지급 비용)

- 항공임, 체제비, 통역비, 전시회 참가 취소 수수료, 현지 통신비, 홍보비/인쇄비 지원 불가
- 위 지원 대상 외의 항목은 인천TP와 협의를 거쳐 지원 여부 결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전시회 상담 실적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4. 경영기반 지원

① 정보화시스템 구축지원

- o (지원내용) 경영관련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지원
- (지원조건) 지원기간 내 구축이 완료되어야 함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용역계약서, 검수서, 세금계산 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 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5. 인력 양성 지원

① R&D, 해외 마케팅 관련 인력 채용 박람회

- (지원내용) R&D, 해외 마케팅 담당 인력 채용을 위한 박람회 참가비, 부스비 지원
- (지원조건) 지원기간 내 개최된 채용 박람회에 해당하며 지원기 간 내에 행사가 개최되었다면 지급비용은 소급인정(당해년도 지급비용)
- 체제비, 홍보비 지원 불가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참가확인증, 검수서, 세금계산 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② R&D, 해외 마케팅 관련 신규 인력 채용

- (지원내용) R&D, 해외 마케팅 담당 인력 채용 관련 헤드헌팅 비, 채용 사이트 광고(배너 등), 온·오프라인 채용 관련 서비 스 이용료(구인구직 플랫폼 등록 비용)
- (지원조건) 수행기관을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검수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 하는 증빙 서류 등

③ R&D, 해외 마케팅 관련 직원 역량 강화

- (지원내용) 직원 교육 훈련 개최, 참석 및 해외 연수비 지원
- (지원조건)
- 관련 교육비, 등록비만 지원이 가능(교통, 체제비 지원 불가)하고 지원기간 내 진행한 교육에 한함
- 수행기관을 인천TP와 협의하여 선정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교육수료증, 송금확인증, 수행기 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6. 녹색 경영 지원

① 탄소중립 경영컨설팅 지원

- (지원내용) 탄소중립 관련 경영컨설팅(탄소수준 진단 및 관리체 계 구축, 탄소저감 제품 시험 등) 지원
- (지원조건) 지원기간 내 결과물이 도출되어야 함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용역계약서, 검수서, 세금계산 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

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② 친환경ㆍ저탄소 인증 및 인증 관련 교육

- (지원내용) 친환경·저탄소 관련 인증 및 인증 관련 역량 강화 교육
- (지원조건)
- 지원기간(10/31)까지 인증서 발급이 불가할 경우, 결과보고서에 인증 획득 진행사항을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향후 인증서 발급 시 인증 획득 증명서 제출
- 친환경·저탄소 인증을 위한 수행기관 선정시 인천TP와 협의하 여 결정
- 인증 관련 교육의 경우, 친환경·저탄소 인증 취득을 위한 교육에 한함
- (결과보고 제출서류) 결과보고서,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교육수료증(인증 관련 교육수료 시), 세금계산서, 인보이스 또는 거래명세서, 송금확인증, 수행기관 통장 사본 및 사업자등록증, 기타 인천TP에서 요청하는 증빙 서류 등

□ 기타 유의사항

- o (지원금 사용 인정 기간) 지역자율프로그램 계획서 승인일 ~ '22. 10. 31.(월) ※ 인정기간 동안 실제 비용을 지출한 경우만 인정
- o (지원금 인정 불가) 모든 VAT, 지원 금액 초과 비용, 송금수수료 지원 불가
- o (계획변경) 계획서 상 지원금 금액 변동, 진행 과정에서 경영상의 중대한 변화, 수행 용역업체 변동, 프로그램 내용 변경 등으로 계획서 수정 필요시 인천TP와 사전협의 후 계획서 변경신청 가능 ※ 사업 포기 및 지원금 잔액 발생 시 후순위 기업(후속지원 예비 후보)에게 기회 제공
- o (비용 측정 근거) 지원금 사용 계획서 제출 시 수행하고자 하는 지 원프로그램의 비용을 측정할 수 있는 근거서류(견적서, 인보이스 등)를 제시하고 관련 서류가 없을 경우 산출 근거를 명확히 기재

o (제출서류) 지원금 사용 계획서, 결과보고서를 제외한 증빙서류는 사본첨부(기업 직인 날인 필수) 가능

o (환율)

- 송금증에 적용 환율이 표기된 경우 : 표기 환율 적용
- 송금증에 적용 환율이 표기되지 않은 경우 : 송금 당일 KEB하나 은행 외환포탈의 고시환율 내 '최초'고시회차 매매기준율 적용
- o (지원제외) 접수기간 내에 사업계획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 타 기관 중복 수혜(부정수혜 시 향후 인천TP 지원사업 제외)
 - 인천TP와 협의 없이 사업 계획을 변경한 경우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기간 : 2022. 4. 20.(수) ~ 5. 4.(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 Bizok(비즈오케이) 회원가입/로그인 후 온라인 접수

(https://bizok.incheon.go.kr/open_content/main.do)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비고
1	후속지원 신청서(직인날인본) 1부	붙임 1
2	지원금 사용계획서(직인날인본) 1부	붙임 2
3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직인날인본) 1부	붙임 3
4	중복지원금지확약서(직인날인본) 1부	붙임 4
5	법인등기부등본	_
6	사업자등록증(사본)	_
7	'21년 재무제표	_
8	'21년 직·간접수출실적 증명서 직접수출 : 직수출실적 증명서(무역협회 발급) 간접수출 : uTradeHub(www.utradehub.or.kr) 간접수출증명	-
9	프로그램 지원금 산출 내역(견적서 등) 근거 자료 각 1부	_

□ 문 의 처 : 인천TP 기업지원센터 서수민 과장(☎032-260-0616)

5 평가내용 및 방법

- □ 평가내용
- o 기업역량 및 성장가능성, 기업의 프로그램 수행계획 및 사업이해도 등
- □ 평가방법 : 서면평가(외부전문가 활용)
- □ 평가항목 및 배점 ※ 선정평가 결과 개별 통보

구분	심사항목	세부내용	배점	소계	
하게시	회사 자금의 안정성		5	10	
의계사	제구구조 <i>및</i> 경향정네 	회사 이익(순이익 등)의 성장성	5	10	
	조직 전문성	국내 조직 구성의 전문성	5	10	
	꼬역 신문경	해외 조직(네트워크) 보유 현황	5	10	
	기업 역량	주요 수출처 및 고객사 현황	10	35	
전문	기립 취당 	2021년 사업 성과 2		33	
선준 위원	성장 가능성	성과 목표 달성을 위한 차별화된 추진 전략	10	20	
기권	33753 	수출 확대 및 기술 확보 전략의 객관성 및 타당성	10	20	
		사업 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	10		
	사업 수행 계획	성과 도출 방법 및 관리 등의 적절성	5	25	
추진 일정 및 신청 금액, 수행기관 등		추진 일정 및 신청 금액, 수행기관 등 타당성	10		
가점	'21년 공동교육 참여여부	'21년 R&D 과제제안서 작성 실습 교육 참여기업	3	3	
합 계				3점	

6 사업신청 시 유의사항

□ 다음의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o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 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 o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 o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회생 신청,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o 지정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 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o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o 여타 정부 및 유관기관의 본 사업과 동일 항목의 지원사업 중복 지원 불가

<별첨 1>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규격인증 현황(481개)

국가별 해외규격인증 지원대상 현황(481개)

		규격인증	
국가별	3-A	AAR	ABS
	(미국낙농및식품가공기기인증)	(미국철도협회)	(미국선급협회)
	ACMI AP	AGA	AHAM
	(미국창작재료협회)	(미국가스협회) AISC	(미국가전제조협회)
	AHRI		AMECA
	(미국제냉난방협회) ANSI	(미국강구조물협회) ANSI/ASHRA	(미국자동차안전부품인증) ANSI/BHMA
	(미국규격협회)	(미국냉동공조학회규격)	(미국건축제품인증)
	ANSI/BIFMA	API	ASME
	(미주사무및가구제품인증)	(미국석유학회)	(미국기계학회)
	ASTM	BPI BPI	CA Proposition 65
	(미국시험재료협회)	(미국생분해성제품인증) CEC	(미국캘리포니아법령65)
	CADR	(캘리포니아에너지효율관리제	CPSC
	(공기정화률인증)	,	(미국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CDCIA	도) CRRC	CT1
	CPSIA	(미국에너지절감형	ᄱᄀᄺᄯᄡᆏᆔᆔᅩᅄᄱᅛ
	(미국소비자제품안전개선법)	도료라벨인증)	(미국냉각탑협회,미국열성능)
		DOE office of Energy	
	DLC	Efficiency and Renewable	DOT
	(북미에너지절감인증)	Energy	(미국운수성)
	Energy Star	(에너지효율) EPA	ETL
	(미국에너지스타)	(미국환경보호국인증)	(미국전기시험연구소)
	ETL SANITATION	FCC	FCN
	(국제보건위생인증)	(미국연방통신위원회)	(미국식품포장제등록제도)
미국	FDA	FDA-GRAS	Federal Aviation
''	(미국식품의약품국)	(미국식품안전물질등록)	Administration
	FedRAMP	FHWA	<u>(미국연방항공국)</u> FIPS
	(미국클라우드보안인증서비스)	(미국연방고속도로관리국)	(연방정보처라표준인증)
	FMVSS	Fugitive Emission Test	Gluten Free
	(미연방자동차안전기준)	(밸브유해물질누설인증)	(글루텐안전인증)
	Gold Seal	Green Seal	Greenguard
	(미국음용수관련인증)	(친환경인증)	(실내공기질시험·인증) HIRF
	GSA (미국연방조달청)	Halogen Free (할로겐안전인증)	(고강도전자기장)
	IACP	IAPMO	ICC-ES Evaluation Reports
	(국제경찰청장협회)	(미국배관자재환경인증)	(미국건축자재관련제도)
	ITE Compliance	MiamiDade NOA	MIL-STD-461g
	(북미신호등인증)	(미국건축자재인증-플로리다	(미군전자파적합성규격)
	(112—323)	주)	,
	MIL-STD-810G	MIL-STD-901D	NCHRP (미국고속도로관련
	(미국육군장비규격)	(미국해군장비규격)	(미국고국모단단 시설물연구프로그램)
	NEBS	NFPA	NFRC
	(미국네트워크장비구축시스템)	(미국화재방재청인증)	(창호단열규정)
	NGV2	NIJ	NIOSH
	(고압연료탱크규격)	(미법무성사법연구소)	(미국국립산업안전보건연구원)
	NMMA (미구요ㅌㅌ레이라이즈)	NOP (오기제프이즈)	NPC /미구이새ㄷ기그경\
	(미국요트트레일러인증) NRC	(유기제품인증)	(미국위생도기규격)
	(미국국가위원회원자력	NRTL (DLD DD) DD LISTAN	PTCRB
1	부품수리인증)	(미국국가인정시험소)*	(북미휴대폰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SCS	SRCC	UL CAP
	(미국과학적환경인증시스템)	(미국태양열집열기인증)	(사이버보안평가프로그램인증)
	UL ECV	UPC	USCG
	(환경성주장검증)	(미국배관및기계인증)	(미국해양안전관련규제)
	USDA	Water Sense	WH-ETL
	(미국농무성환경인증)	(미국환경보호국인증)	(북미건축자재마크)
	WHI (북미지역건축자재인증) AdBlue	WQA (미국수질협회) BPR	BSI BS EN489
	(유럽자동차매연저감제인증)	(유럽살생물제관리법)	(열(히트)파이프지침)
	CCA	CCNR	CE
	(유럽전기표준화위원회)	(라인강항해중앙위원회인증) COSMOS	(유럽공동체마크)
	CEN/TS 17342	(유럽유기농 및	CPNP
	(오토바이도로안전기술규격)	천연화장품인증)	(유럽화장품등록)
	DNV GL	ECB-S	Eco-Labeling
	(노르웨이-독일선급협회)	(유럽금고안전인증)	(EU환경마크)
	ECO-PASSPORT	EFSA	EHEDG
	(섬유제조공정인증)	(유럽식품안전청)	(유럽위생설계및디자인협회)
	e-Mark (유럽연합차량용부품 안전인증마크)	EN 15267 (유럽대기질자동 측정시스템평가인증)	EN ISO 20471 (반사색안전조끼인증)
유럽	ENEC	ESV	EU ORGANIC-EEC834/2007
	(유럽규격전기인증)	(유럽위성지구국관련인증)	(EU유기농식품인증)
	EU-MED	European Privacy Seal	FIBC
	(유럽선박장비인증)	(유럽프라이버시씰)	(산업용포장재의정전분류)
	Green Dot	ISCC	M Classification
	(유럽포장재폐기물관련인증)	(바이오매스및에너지인증)	(공공건물내섬유재료규제)
	Nordic Swan (유럽에코라벨)	Novel Food (신규식품과신규 식품첨가제인증)	Oeko-tex (유럽섬유환경인증)
	REACH	Regulation (EU) 10/2011	Regulation EC No 1223/2009
	(유럽의신화학물질관리제도)	(유럽식품플라스틱인증)	(유럽화장품유해물질규제지침)
	Regulation EC No 1935/2004	Regulation EC No 79/2009	Seedling
	(유럽식품접촉물질규제지침)	(유럽수소자동차규제지침)	(생분해인증제도)
	SEMI (유럽반도체장비인증)	Solar Keymark (유럽태양열제품적합성인증)	
네덜란드	KEMA (네덜란드전기시험소)	Kiwa Water Mark (네덜란드위생안전인증)	Mifare Security Certification (반도체RF보안인증)
덴마크	DEMKO	Drop Mark	Ø-label
	(덴마크전기기기검사협회)	(덴마크식수접촉제품인증)	(덴마크유기농인증)
	AD2000	BDIH	BV-043
	(독일압력용기인증)	(독일유기능마크인증)	(독일해군장비규격)
독일	Dermatest (화학제품인피자극성등급인증)	DIN (독일규격협회)	DVGW (독일가스식음료전문가협회)
	GS (독일품질안전)	IT-Grundschutz (정보보호인증제도)	KTW test certification (독일식수관련인증)
	LFGB (독일식품용품법)	LGA (독일바이에른공업시험청)	LTF (독일감항성시험)
	MPA (독일건축자재인증)	TUV (독일기술관리협회)	VDE (독일전기기술자협회)
	VdS (독일보험협회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Allergy UK	ASTA	BABT	
	(영국알러지협회)	(영국안전규격)	(영국통신기기승인)	
	BBA	BSI	CPA	
	(영국건자재인증)	(영국표준협회)	(영국상업용제품인증)	
영국	FIRA	I-LIDS	LR	
	(영국가구산업연구협회)	(영국경찰비디오분석인증)	(영국선급협회)	
	SCPN	UK Cosmetic Regulation	UK REACH	
	(영국화장품등록)	(영국화장품등록)	(영국화학물질등록)	
	UKCA (영국제품적합인증마크)	WRAS (영국수질협회인증)		
이탈리아	ACCREDIA	IMQ	RINA	
	(이탈리아전기제품인증)	(이탈리아전기기술협회)	(이탈리아선급협회)	
	ACS	BV	CSTB	
	(프랑스보건위생적합증명)	(프랑스선급협회)	(프랑스건축자재인증)	
프랑스	DGCCRF (프랑스소비자보호 및 불공정경쟁감시국인증)	ECOCERT (프랑스생산공장인증)	GTT (프랑스GTT선급)	
	NF (프랑스표준규격)			
벨기에	CEBEC (벨기에전기기기시험소)	Vincotte (벨기에환경인증)		
스페인	AEI Seal of Cybersecurity for Organizations (사이버보호인증제도)	AENOR (스페인규격협회)	National Security Framework (스페인국가보안인증제도)	
핀란드	FIMKO (핀란드전기기기검사협회)			
스웨덴	RISE (스웨덴국립시험연구협회)	SEMKO (스웨덴전기기기협회)		
노르웨이	NEMKO	NIPH	NORSOK	
	(노르웨이전기기기협회)	(노르웨이음용수관련인증)	(노르웨이표준해양규격)	
스위스	ESTI Safety Mark (전기자동차충전플러그인증)			
슬로바키아	슬로바키아 장비검증			
	BAA	BOKEN	CMJ mark	
	(일본자전거승인)	(일본방적검사협회)	(일본전기용품및부품)	
	F☆☆☆☆ (일본친환경규격)	FESC (일본소방설비인증)	Japan Type Approval of Maritime Equipment (일본선박형식승인)	
	JAPEIC	JAS	JCMVP	
	(일본용접관리프로세스인증)	(일본유기제품인증)	(암호모듈인증)	
일본	JET PVM	JFSL	JHOSPA	
	(일본태양광인증)	(일본식품위생법-완구)	(일본위생수지협의회인증)	
	JIA	JIS	JISEC	
	(일본가스기기검사협회)	(일본표준규격)	(IT시큐리평가및인증)	
	JSFL	JWWA	NK	
	(일본식품위생법)	(일본상수도협회)	(일본선급협회)	
	PMDA(JPAL)	Privacy Mark	PSC	
	(일본의약품인증)	(프라이버시마크제도)	(일본소비생활용제품안전인증)	
	PSE (일본전기용품형식승인)	SIAA (일본향균제품기술협의회)	S-mark (일본전기용품시험소)	

국가별	규격인증		
	VCCI (일본전자파장애자유규격협의회)	일본 ECO mark (일본친환경제품인증)	일본건축자재평가
	일본국토교통성인증	일본무선통신인증 (JAPANMIC, JATE, TELEC)	일본불연재료인증
	일본철골제작 공장인증 FireProtectionCertificate		
	Fire Protection Certificate (소방안전증명서)	FSB (러시아암호화인증)	GOST (러시아표준규격)
	Pattern Approval Certificate (러시아계측기인증)	RS (러시아선급협회)	RTN (러시아연방유해산업시설인증)
러시아 (신북방)	Russia Hygienic Conclusion (러시아위생증명)	러시아항공조명인증	수출.입수산물.수산가공품의품 질관리 및 위생안전
	의료기기러시아연방보건감독청 (Registration Certificate of Medical Devices)		
말레이시아	DOSH (말레이시아산업안전보건국)	Malaysia MEPS (말레이시아에너지효율)	MDA (말레이시아의료기기등록)
(신남방)	MS 144 (말레이시아콘크리트 보강용강선규격)	NPRA (말레이시아국가 의약품관리청인증)	SIRIM (말레이시아표준산업규격)
멕시코	COFEPRIS (멕시코연방위생 위험관리위원회)	IFETEL (멕시코통신인증)	NOM (멕시코제품안전규격)
	SSA (멕시코보건부-위생등록)		
	BSMI (대만표준검험국)	CNS (대만국가표준)	CR (대만선급)
대만	NCC (대만통신기기인증)	Taiwan Green mark (환경보호인증마크)	TFDA (대만의료기기)
	VSCC (대만자동차및부품인증)	TIG	
태국 (신남방)	Thailand Green Label (태국그린라벨)	TISI (태국공산품규격제도)	태국 식약청
브라질	ABESE (브라질전자보안제품인증제도) INMETRO	ANATEL (브라질국가정보통신국) PBE	ANVISA (브라질식품의약품인증)
	(브라질강제인증) SASO	(브라질에너지라벨링제도) SFDA	브라질농약약품등록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표준화기구) KKDIK	(사우디아라비아식약청) TSE	
터키	(터키화학물질관리제도) BCA Green Mark	(터키강제인증) BS476-22	CPS
싱가포르 (신남방)	(싱가포르건설청그린마크) Data Protection Trustmark	(방화도어테스트) HAS	(싱가포르제품안전표시)
	(데이터보호표준및적합성인증)	(싱가포르의료기기등록)	IMDA (싱가포르통신장비인증)
	MTCS (클라우드보안인증)	NITES (NITES보안인증)	PSB (싱가포르생산성표준원)
	SINGAPORE GREEN LABEL (싱가포르친환경인증마크)	Singapore WELS (싱가포르물효율)	
아르헨티나	ANMAT (아르헨티나의료기기인증)	INTI (아르헨티나산업기술청인증)	IRAM (아르헨티나전기안전협회)

국가별	규격인증		
	ARAI	BIS	CDSCO
	(인도자동차협회)	(인도제품인증)	(인도약품표준통제국)
	CPRI (인도전기전력인증)	CRS (인도전자제품강재등록제도)	DCG (인도식약청)
인도 (신남방)	IBR (인도보일러규정)	IRS (인도선급인증)	MTCTE (인도통신장비보안규제)
	RDSO (인도철도인증)	STQC (인도생채인식장치인증)	TRA (인도및티벳지역농자재인증)
	인도자동차부품인증 (Central Motor Vehicle Regulation Approval)		
	BKI	BPOM	SNI
인도네시아 (신남방)	(인도네시아선급인증) 인도네시아 유무선 통신기기 인증	(인도네시아식약청등록)	(인도네시아국가규격)
	AQSIQ (중국국가질량감독검험총국)	CCC (중국강제인증)	CCIS (네트워크핵심설비 및 사이버보안전용제품안전인증)
	CCS (중국선급인증)	CEL (중국에너지효율라벨)	CGAC (중국가스용품품질감독관리)
	China Environmental Labelling (중국환경표지인증)	China REACH (중국화학물질관리제도)	CMA (중국계측학허가인증)
	CPA (중국계측기형식승인)	CRCC (중국철도제품인증)	CSEL (중국보일러및압력용기인증)
	CSQL (중국안전품질승인)	GB 18030 (중국어인코딩인증)	GB TEST (중국국가표준시험성적서)
중국	HG/T 2888-2010 (중국고무장갑시험검사)	ICAMA (중국농업부등록)	LA mark (중국노동보호용품마크인증)
	MOH (중국수입식용수관련 안전제품위생허가)	NAL (중국통신장비허가제도)	NIM (중국계량과학원)
	NMPA (중국국가약품관리감독국)	SAMR (중국보건식품허가등록)	SRRC (중국통신제품형식승인)
	건설산업과학기술 성과평가인증	상용 암호화 제품 인증	신식품원료허가
	중국 비료 허가	중국 소독제 등록	중국 수입 첨가제 등록
	중국 유기농 식품 인증	중국 컴퓨터안전제품 판매허가	중국미생물수입등록
	중국식품수화인등록 (입경화물검사검험증명)	중국자율제품인증 (CQC, CVC등)	폐기물 선적 전 검사
카자흐스탄 (신북방)	GOST-K (카자흐스탄인증)		
중동	GCC (중동적합성마크)		
	CAN/CGSB155.20 (캐나다방염원단인증)	CCMC (캐나다건축자재인증)	CNF (캐나다화장품사전신고)
-W. Le-1	(개나다압력제품등록)	(개 <u>+ </u>	(금 다 드 드 드 드 드 드 드 드 드 드 드 드 드 드 드 드 드 드
캐나다 	CWB (캐나다용접협회)	HC (캐나다의료기기인증)	IC (캐나다산업성)
	ISO/IEC 27018 (개인식별정보보안통제)	NRCan-Energy Efficiency (캐나다에너지효율관리제도)	TC (캐나다위험물질운송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쿠웨이트	KUCAS (쿠웨이트제품적합인증)		
페루	Registro sanitario (보건등록증)		
콜롬비아	ICONTEC (콜롬비아표준산업규격)	INVIMA (콜롬비아국립식품의약품감시원)	RETIE (변압기강제인증)
	RETIQ (콜롬비아에너지효율)		
폴란드	B mark (폴란드전기안전인증)	NTA (폴란드건축자재인증)	폴란드농약약품등록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판매인증서		
필리핀 (신남방)	ERC (필리핀에너지규제위원회)	ETV-Philipphines (필리핀환경기술검증)	ICC (필리핀표준규격인증)
	PEFC (필리핀산림제품인증)	PFDA (필리핀식품의약청)	
라오스 (신남방)	MPT (라오스우정통신부인증)		
베트남 (신남방)	CR Mark (베트남품질안전인증)	VNEEP (베트남에너지효율인증)	VNTA (베트남유무선통신인증)
	베트남 식품 인허가	베트남 의료기기 수입허가	베트남보건부의약청 화장 품등 록
	ACRS (호주신뢰성인증)	ADR (호주자동차안정 및 배기량규격)	AFRDI (호주사무가구품질인증)
호주	AGA (호주가스안전인증)	AISEP (호주정보보안평가프로그램)	APEC CBPR (APEC개인정보보호인증)
	AS (호주규격협회)	ASD (호주ASD암호화평가인증)	Code Mark (호주건축법규위원회 건축자재인증)
	PS (호주개인보호장비)	RCM (호주전기전자강제인증규격)	SAI GLOBAL (호주품질보증협회:QAS)
	TGA	Water Mark	WELS
	(호주의약품규제기관)	(호주배관제품인증)	(호주물효율라벨링제도)
	호주농약약품등록 Green Label	HKSM	OFCA
홍콩	(홍콩그린라벨)	(홍콩제품안전마크)	(홍콩이동통신인증)
이라크	COSQC (이라크표준)		
남아프리카	ICASA (남아프리카공화국 독립통신위원회)	NRCS (남아공국립강제사양규제)	SABS (남아프리카공화국표준국)
이란	CRA (무선통신기기인증)	ISIRI (이란강제인증)	MOH (이란보건부등록)
나이지리아	SONCAP (나이지리아강제인증)		
아랍에미레이트	Dubai Civil Defence (두바이화재예방제품승인)	ECAS (전자기기인증제도)	EQM (아랍에미레이트제품적합성마크)
	TRA (아랍에미레이트유무선통신인증)	(= · · · - = · · /	
이스라엘	IAI (이스라엘항공우주인증)	SII (이스라엘표준연구소)	
우크라이나	Ukr SEPRO	(기ㅡ의 ㄹㅛᆫ 한 ㅗ/	
(신북방)	(우크라이나제품인증)		

국가별	규격인증		
모로코	모로코화장품사전등록		
칠레	SEC (칠레에너지관리국)		
미얀마 (신남방)	MPU (미얀마신용카드단말기인증)		
이집트	CAPA (이집트의료기기등록)	EDA (이집트식약청화장품등록)	
뉴질랜드	ECNZ (뉴질랜드환경라벨)	New Zealand WELS (뉴질랜드물효율)	뉴질랜드농약약품등록
바레인	Energy Efficiency Rating Labels (바레인에너지효율라벨)	,	
캄보디아 (신남방)	ISC (캄보디아안전표준)		
	AEC-Q (자동차용전자부품품질인증)	AEM (장비제조및서비스 국제무역협회인증)	ALE 1.0 (RFID제품인증)
	AMCA (공조기시스템국제협회)	ASC (지속가능한수산물(양식)인증)	ATP (부패성음식의수송적합승인)
	BLUESIGN (섬유화학물질인증제도)	Bluetooth (블루투스제품인증)	BQB (블루투스제품간 호환성확보목적의인증)
	BRC IOP (국제식품안전협회 포장재승인규격)	BRCFOOD (식품안전글로벌규격)	BREEAM (친환경건축물평가제도)
	Chip card approval (스마트카드사승인)	CMMI Lv3~Lv5	Common Criteria for Information Technology Security Evaluation (정보기술보안평가)
	Conforming Golf balls (국제골프제품안전인증)	COSPAS-SARSAT (조난경보기또는 위치정보제품인증)	DLMS-COSEM (계량장비프로토콜의시험인증)
	EAC (구.CU-유라시아적합성인증)	EFfCI (유럽화장품원료협회)	EHP003 (국제열파이프안전인증)
국제	EMV (국제IC카드보안인증)	EtherCAT Compliance test (이더캣적합성테스트)	FAIR TRADE (국제공정무역마크)
	FIDO (생체인증)	FIFA IMS (InternationalMatchStandard)	FIFA QUALITY PRO (국제축구연맹품질인증)
	FSC (국제산림관리협의회)	FTC (화염시험인증)	G7Master (국제인쇄표준)
	GLOBAL G.A.P (국제우수농수산물인증)	GOTS (국제유기농섬유규격)	GRS (국제재생섬유친환경인증마크)
	HALAL (이슬람음식및영양협회)	HDMI (PC와디스플레이의 인터페이스표준규격)	HSNO APPROVAL (유해물질과신규생물관련인증)
	IAAF (국제육상경기연맹)	ICSA Labs (IT보안제품성능인증)	IECEE (IEC안전규격상호인증)-CB
	IECEx (국제방폭상호인증)	IFOAM (세계유기농업운동연맹)	ILO (국제노동기구)
	Intertek Green leaf mark (인터텍그린리프마크)	IPA (클린룸인증)	ISO 12500 (압축공기용필터국제표준)
	ISO 22899 (해양제트화재발생위험안전인증)	ISO 26262 (자동차기능안전성국제표준)	ISO 27017 (클라우드정보보안지침)
	ISO 3834 (용접ISO인증)	ISO 7096 (토공기계인간관련진동규격)	ITF Ball Approval (국제테니스연맹테니스볼승인)

국가별	규격인증		
	ITF Classified Court pace (국제테니스연맹 테니스코트제품인증)	IWA 14-1 (국제차량보안안전인증)	KOSHER (유대교식품적법인증)
	LPCB (보안및화재예방인증)	MPR2 (전자파측정및검사규격)	MSC-CoC (지속가능한수산물인증)
	NADCAP (국제항공기자동차부품인증)	NON GMO (유전자변형농산물 미사용인증마크)	OCS (유기농섬유인증)
	OE (유기농목화섬유에대한인증)	OIML (국제법정계량기구)	OK Biobased (국제바이오제품인증)
	OK Biodegradable Certification (국제생분해성친환경인증)	OK compost (생분해성인증)	OpenADR (전력수요관리인증)
	PCI (신용카드단말기보안국제규격)	Profibus (국제공장자동화기기인증)	QI (무선충전표준인증)
	R&A Certificate (골프공공인구)	RoHS (유해물질사용제한)	RSPO (국제친환경팜유인증)
	SG-Mark (소비자제품안전인증)	SIL (국제안전레벨등급인증)	SQF (식품품질안전)
	TCO05 (정보사무기기효율인증)	The Skin Cancer Foundation's Seal of Recommendation (피부유해자외선차단검증인증)	Toxproof (환경유해물질안전마크)
	UCI (국제사이클연합인증)	UN38.3 (리튬배터리운송안정성시험)	USB-IF (USB임플리멘터스포럼)
	Visa PayWave (신용카드단말기인증)	WHO (세계보건기구)	Wi-Fi Certified (Wi-Fi상호운용성인증)
	WPS (선급용접절차승인)	Z-Wave Product Certification (전자제품상호호환성인증)	

- ※ 위 지원대상 이외의 해외규격인증 및 ESG경영평가*·탄소중립과 관련된 인증은 "기타규격 인증 지원"으로 신청가능하며,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 * ESG(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경영평가 : 기업 또는 기업에 대한 투자의 지속 가능성과 환경·사회적 영향을 측정하는 요소
- ※ 수출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품인증에 대해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시스템 인증만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 NRTL(Nationally Recognized Testing Laboratory/미국국가인정시험소)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1)에서 인정한 시험소로서 현재 21개 기관(2)이 인정을 받음
 - (1) 미국노동부산하 직업안전보건청(OSHA): https://www.osha.gov/dts/otpca/nrtl/nrtllist.html
 - (2) NRTL인정 21개기관: ARL, BACL, BVCPS, CSA, DEKRA, FM, IAPMO, ITSNA, MET, LTC, NNA, NSF, QAI, QPS, SGS, SPTL, SWRI, TUV Rheinland, TUV SUD, TUV PSG, UL